

귀하는 산출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예상 (Good Faith Estimate) 비용 내역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의료 기관은 특정 유형의 의료 보장이 없거나, 특정 유형의 의료 보장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해당 항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의료 항목 및 서비스 관련 청구서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가 요청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서비스를 예약할 때 의료 항목이나 서비스 총 예상 비용에 관하여 예상 비용 내역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검사, 처방약, 의료 장비, 병원비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 최소 영업일 기준 3일 전에 의료 항목이나 서비스를 예약했다면, 예약 후 영업일 기준 1일 안에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서면으로 예상 비용 내역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소 영업일 기준 10일 전에 의료 항목이나 서비스를 예약했다면, 예약 후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서면으로 예상 비용 내역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의료 항목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기 전에 의료 제공자나 시설에 예상 비용 내역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비용 내역서를 요청했다면, 요청 후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의료 제공자나 시설이 서면으로 예상 비용 내역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의료 제공자나 시설에서 예상 비용 내역서에 나온 금액보다 최소 400달러 더 많은 금액이 나왔다면 해당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상 비용 내역서와 청구서의 사본을 보관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예상 비용 내역서 권리와 관련한 질문이나 더 많은 정보는 cms.gov/nosurprises/consumers 에 방문하십시오. 또는 FederalPPDRQuestions@cms.hhs.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800.985.3059 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체 목록을 보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브로셔를 요청하거나 corewellhealth.org/policies 에 방문하십시오.

